

■ 도서관법 시행령 [별표 6]

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(제33조제2항 관련)

1. 시설 기준

- 가. 국공립 공공도서관(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: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
- 나.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: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

2. 도서관자료 기준

가. 국공립 공공도서관

- 1)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: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, 매년 1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
- 2)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: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, 매년 1천5백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
- 3)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: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, 매년 3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

- 나.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: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

비고: “공공도서관당 인구 수”란 해당 시·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·도의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(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)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.